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1월 14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양준모 | www.cubs.or.kr

<대테러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오해와 진실 시리즈 ③>

'통신비밀보호법'의 7대 오해와 진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1. 들어가는 말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새누리당안)은 현행 통비법의 미비점과 세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 및 개인사생활정보 침해 문제 등을 대폭 보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통비법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들을 문제 삼아 반대의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법안을 심사해야 할 일부 국회의원조차도 이러한 논리에 편승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와 세계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IS(이슬람국가) 민간인 테러, 북한의 무력 도발 등 통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세간에서 근거 없이 제기되고 있는 통비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관련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통비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의 7대 오해와 진실

오해 1. "통비법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감청을 자행하는 법이다."

현행 통비법은 정보수사기관이 휴대폰 감청장비를 도입하여 국회에 신고하면 통신업체 협조 또는 감시자 없이도 감청이 가능하다. 이것을 오용한 사례가 과거 국정원이 발표한 휴대폰 불법 감청 사건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 감청 재발 방지 차원에서 통비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모든 전기통신 감청은 통신사업자 감청설비만 이용하도록 하고 자체 감청 장비를 보유하지 않게 함으로 과거처럼 불법감청 악용을 원천으로 차단한다. 또한 통비법 제16조(벌칙)에 의거하여 국가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업체에 감청 집행을 요청하거나, 이에 협조한 통신업체 직원도 10년 이하의 징역 즉, 중형에 처하게 된다.

오해 2. "불법감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현행 통비법 하에서는 불법감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일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불법감청 차단에 대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국가 기관의 직접감청 금지 항목을 포함하여 감청 로그기록 위조 방지로 '끼워넣기' 식 불법감청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 및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번호 끼워넣기'식 불법감청을 막기 위해 통신 사업자 감청 시작단계부터 로그기록이 자동 보존되고 기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3자(법원, 통신사업자, 국가기관) 로그기록 동시 보관 등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신업체 직원은 통비법 제17조에 의해 국기기관이 집행 요청한 감청 전화번호가 법원이 허가한 번호와 내용이 다를 경우 집행을 거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7인(미래부차관, 여야추천 2명 통신업체 2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통신제한 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하여 불법감청을 감시하고 감청집행 창구를 운영하여 통신업체와 정보수사기관의 유착을 차단할 수 있다.

오해 3. "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언제든지 엿듣는다."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감청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죄는 국정원법 제3조(직무)에 따라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 5개-검찰, 경찰은 280여개-로 제한되어 감청 남발 가능성을 희박하다. 통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자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감시자 없는 독자적인 감청을 금지하고 통신업체 협조 하에서만 감청이 가능하므로 영장 없는 감청, '끼워넣기식' 감청 등 과거에 일어났던 불법감청 행위는 불가하다. 통신업체에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는 감청, 끼워넣기식 감청을 요구해도 통신업체 직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직장의 파면·해임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해 4. "특정인 사찰목적 '끼워넣기 감청' 차단방법이 전무하다."

현행 통비법은 국기기관의 독자적인 감청을 허용하여 '끼워넣기식' 감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직접감청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사찰을 위한 '끼워넣기 감청'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현재 통신업체를 통한 감청인 경우에도 직원은 통비법 제17조에 의해 국가기관이 집행 요청한 감청 전화번호와 법원이 허가한 번호와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집행을 거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오해 5. "개인 통신비밀이 국정원 손아귀에 쥐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통비법 개정안에 의하면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없으며 범죄수사 목적과 무관한 통화내용은 즉시 삭제하여 감청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였다. 개정안 제12조에 의하면 감청으로 입수된 자료는 첫째, 감청의 목적이 된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예방 및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둘째,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셋째,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 목적 외 감청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므로, 적법한 감청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개인 간 사생활 통화는 즉시 삭제토록 조치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오해 6. "상시적 휴대폰 감청 허용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통비법 개정안은 법원이 감청 대상자 전화번호에 대해 공개 가능한 비표를 생성하여 국회, 법원, 통신업체, 정보수사기관이 언제든지 상호 공유하도록 하여 불법감청 여부 감시로 감청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통비법이 개정되면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상시적으로 마음대로 감청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투명화된 법치 국가에서 상식

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며, 다만 현행 통비법이 지속된다면 오남용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오해 7. "국민들이 휴대폰 감청법을 원치 않는다."

지난 11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국민의 68.6%가 "중대범죄로 한한 감청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청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중 6명 이상인 64.6%로 조사된 반면,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4.1%에 그쳐 2.5배가량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현재 법령 미비로 합법적 휴대폰 감청과 대테러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인지한 것은 61.5%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인지 의견은 38.5%로 나타나, 미인지 의견이 인지 의견보다 23.0%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맺는 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새누리당) 통비법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의 통비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와 사생활침해 등을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즉, 수사 및 안보를 목적으로 한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되 감청 대상 및 허가, 기간,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 불법감청에 대한 처벌조항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장비 설치 및 협조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감청으로 인한 개인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관계법령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테러 및 중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한 합법적인 감청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관련법을 계류시키는 것은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회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는 통비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하루 빨리 관련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법안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